

## 상품요약서

이 상품요약서는 보험약관 등 무배당 보너스주는하이브리드연금보험 B2601의 기초서류에 기재된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보험약관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상품의 특이사항

#### Q. 무배당 보너스주는하이브리드연금보험 B2601의 계약자적립액 및 연금연액은 어떻게 계산되니까?

- A. 무배당 보너스주는하이브리드연금보험 B2601의 계약자적립액 및 연금연액은 적립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며, 적립이율은 아래와 같이 적용합니다.
1. 계약일부터 경과기간이 10년 이하인 경우 : 확정이율
  2. 계약일부터 경과기간이 10년 초과인 경우 : 공시이율
- ‘확정이율’은 이 보험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이율을 말하며, 확정이율 수준은 경과기간별로 다를 수 있으며, 계약 체결 시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안내 됩니다. 또한,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0.5%를 최저한도로 합니다.

#### Q. 무배당 보너스주는하이브리드연금보험 B2601의 추가납입과 중도인출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A. 무배당 보너스주는하이브리드연금보험 B2601 적립형의 경우 계약자는 납입기간 동안 납입하기로 약정한 기본보험료 총액의 200%, 거치형의 경우 기본보험료(일시납보험료)의 200% 이내에서 시중금리 등 금융환경에 따라 매년 회사가 정하는 한도 내에서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계약자는 계약일부터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동안 연12회(보험년도 기준)에 한하여 계약자적립액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연금형의 경우 연금이 개시된 이후에도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습니다. 1회에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은 10만원 이상 만원 단위로 하며, 인출 당시 해약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약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의 50%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계약자적립액이 향후 위험보험료 등 계약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금액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더는 인출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인출금액의 0.2%와 2,000원 중 적은 금액 이내에서 중도인출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계약자적립액에서 차감합니다. 다만, 중도인출수수료는 연4회까지 면제됩니다.

#### Q. 무배당 보너스주는하이브리드연금보험 B2601의 장기유지보너스는 무엇인가요?

- A. 무배당 보너스주는하이브리드연금보험 B2601은 장기유지보너스 지급시점에 아래에서 정한 ‘장기유지보너스’를 추가납입보험료에 대한 계약자적립액에 가산하여 적립합니다.

$$\text{장기유지보너스} = \text{장기유지보너스 기준금액} \times \text{장기유지보너스 지급률}$$

##### 1) 적립형

- ① ‘장기유지보너스 기준금액’은 장기유지보너스 지급시점 전일까지 이미 납입한 기본보험료의 합계와 장기유지보너스 지급시점 전일까지 납입하기로 약정한 주계약 기본보험료 총액 중 작은 금액으로 하며, 장기유지보너스 지급시점 및 장기유지보너스 지급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기유지보너스 지급시점	장기유지보너스 지급률	
	3년납	5년납 이상
계약일부터 3년이 되는 시점의 계약해당일	2.0%	2.0%
계약일부터 5년이 되는 시점의 계약해당일	2.0%	3.0%
계약일부터 10년이 되는 시점의 계약해당일	2.0%	4.0%

- ② ‘①’의 이미 납입한 기본보험료의 합계는 실제로 납입한 기본보험료의 합계를 의미합니다. 다만,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합계에는 특약보험료는 포함되지 않으며, 추가납입보험료 및 중도인출 금액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 2) 거치형

- ① ‘장기유지보너스 기준금액’은 기본보험료로 하며, 장기유지보너스 지급시점 및 장기유지보너스 지급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기유지보너스 지급시점	장기유지보너스 지급률
계약일부터 5년이 되는 시점의 계약해당일	2.0%
계약일부터 10년이 되는 시점의 계약해당일	5.0%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가입자격요건

1. 보험종류

무배당 보너스주는하이브리드연금보험 B2601

보험의 종류		연금지급형태	
1형 (직립형, 거치형) 2형 (직립형, 거치형)	종신 연금형	보증기간부	정액형(10~40년, 100세 보증)
			체증형(10~20년 보증)
			소득보장형(10~20년 보증)
		보증금액부	일반형
자유형			

2. 보험기간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계약일부터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종신연금형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부터 종신까지
	확정연금형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부터 확정된 연금지급기간 (5년, 10년, 15년, 20년, 30년, 50년, 60년) 까지
	상속연금형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부터 종신까지

3.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가입나이 및 연금개시나이 및 보험료 납입주기

구분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가입나이	연금개시 나이(Y)	보험료 납입주기
직립형	3년	0세 ~ (Y-10)세	45세~85세	월납
	5년	0세 ~ (Y-10)세		
	7년	0세 ~ (Y-10)세		
	10년	0세 ~ (Y-10)세		
	15년	0세 ~ (Y-15)세		
	20년	0세 ~ (Y-20)세		
거치형	일시납	0세 ~ (Y-10)세		일시납

4. 보험료에 관한 사항

가. 기본보험료

(1) 직립형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 매월 계속하여 납입하기로 약정한 보험료를 말하며, 최저납입보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료 납입기간	기본보험료
3년납	50만원 이상
5년납 이상	20만원 이상

(2) 거치형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납입한 일시납보험료를 말하며, 일시납보험료는 1,000만원 이상으로 합니다.

## 나. 추가납입보험료

### (1) 적립형

기본보험료 외에 계약일 이후 1개월이 지난 후부터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종료일의 2년 전 계약해당일 이전까지 보험료 납입한도에 따라 추가로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를 말한다. 추가납입보험료는 월정기추가납입보험료와 수시추가납입보험료로 구분된다.

(가) 월정기추가납입보험료 : 계약자가 계약일 이후 1개월이 지난 후부터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종료일의 2년 전 계약해당일 이전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를 말한다.

- ① 계약자는 월정기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 변경 및 중지를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은 신청일 이후 도래하는 익월 월정기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하기로 약속한 날부터 적용된다.
- ② 월정기추가납입보험료는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는 매월 기본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에 기본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보험료 납입기간 이후에는 계약자가 월정기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을 신청할 때 매월 납입하기로 한 날에 납입한다. 다만, 해당 월에 납입하기로 한 날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마지막 날을 납입하기로 한 날로 한다.
- ③ ‘(다)’에서 정하는 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납입한도의 초과가 발생하는 해당 월부터 월정기추가납입보험료는 자동으로 납입중단된다.
- ④ 월정기추가납입보험료는 1회에 5만원 이상 납입되어야 한다.
- ⑤ 해당 시점의 월정기추가납입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우 회사는 차회 이후의 월정기추가납입보험료를 납부할 때 미납입된 월정기추가납입보험료를 청구하지 않는다.

(나) 수시추가납입보험료 : 계약자가 계약일 이후 1개월이 지난 후부터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종료일의 2년 전 계약해당일 이전까지 수시로 납입하는 추가납입보험료를 말하며, 수시추가납입보험료는 1회에 5만원 이상 납입하여야 한다.

(다) 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한도

계약자가 추가납입 할 수 있는 추가납입보험료의 총액(월정기추가납입보험료와 수시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은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 납입하기로 약정한 기본보험료 총액의 200%이내에서 시중금리 등 금융환경에 따라 매년 회사에서 정하는 한도로 하며, 1회에 납입 가능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한도는 경과 기간별로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begin{aligned} & \text{1회에 납입 가능한 추가납입보험료 한도} \\ & = \text{해당월까지의 납입할 기본보험료} \times 200\% - \text{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 \end{aligned}$$

계약자적립액의 중도인출이 있을 경우에는 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한도에 인출금액의 누계를 더한 금액을 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한도로 한다.

(라) ‘(다)’에서 시중금리에 따라 납입한도를 축소하는 경우는 3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의 직전 3개월 월평균 이율이 이 계약의 최저보증이율(연복리 0.5%) 이하로 하락하여 3개월 이상 계속 하회하는 경우에 한한다.

(마) 납입한도를 별도로 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의 한도를 적용한다.

### (2) 거치형

(가) 기본보험료(일시납보험료) 외에 계약일 이후 1개월이 지난 후부터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종료일의 2년 전 계약해당일 이전까지 보험료 납입한도에 따라 수시로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를 말한다.

(나) 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한도는 기본보험료(일시납보험료)의 200%이내에서 시중금리 등 금융환경에 따라 매년 회사에서 정하는 한도 내에서 납입할 수 있다. 계약자적립액의 중도인출이 있을 경우에는 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한도에 인출금액의 누계를 더한 금액을 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한도로 한다.

(다) ‘(나)’에서 시중금리에 따라 납입한도를 축소하는 경우는 3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의 직전 3개월 월평균 이율이 이 계약의 최저보증이율(연복리 0.5%) 이하로 하락하여 3개월 이상 계속 하회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납입한도를 별도로 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나)’의 한도를 적용한다.

## 6. 건강진단 여부

이 상품은 피보험자의 기존계약 유무, 나이 및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 등에 의해 건강 진단을 시행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보험가입 가능여부를 판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입자격을 제한하는 이유는 보험계약은 사회보장제도와 달리 상법상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사업자의 승낙에 의해 성립되며, 다수의 동질적인 위험을 가진 피보험자들의 경험통계를 기초로 보험료 등이 산출되기 때문에 위험의 동질성 확보와 가입자간의 형평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 ◆ 보험금 지급사유

### 1. 상품의 구성

주계약 - 무배당 보너스주는하이브리드연금보험 B2601  
+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제도성특약)

### 2. 보험금 지급사유 및 보험금부별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아래의 내용은 보험금 지급사유 및 보험금부별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주계약

##### 1) 재해장해급여금

지급사유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지급금액	1,000만원 (다만,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주)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 당시 계약자적립액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큰 금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2) 노후설계자금

지급사유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계약자가 노후설계자금의 지급을 신청할 때 (다만, 1회에 한함)
지급금액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에 노후설계자금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

- (주) 1.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이란 연금계약 순보험료(기본보험료에서 보장계약 순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 비용을 뺀 금액)를 적립이율로 납입일부터 일자계산을 하여 적립한 금액으로,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됩니다.
2. 노후설계자금이란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에 계약자가 선택한 노후설계자금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노후설계자금 지급 신청일’ 까지 매월 계약해당일에 계약관리비용(유지관련비용)을 차감하고 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을 말하며,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합니다. 다만, 노후설계자금 선택비율이 0%인 경우 노후설계자금은 지급되지 않으며,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 전액을 기준으로 산출방법서에 따라 연금연액이 산출됩니다.
3. 위에서 정하는 ‘노후설계자금 지급 신청일’ 이란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에 계약자가 노후설계자금의 지급을 신청한 날을 말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노후설계자금의 지급을 신청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사망일을, 확정연금형의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종료일을 ‘노후설계자금 지급 신청일’ 로 합니다.

### 3) 연금

종신연금형(보증기간부, 보증금액부), 확정연금형, 상속연금형 중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지급형태, 연금지급형태의 구성비율, 노후설계자금 선택비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연금을 지급합니다.

#### ① 종신연금형 보증기간부

지급사유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다만,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보증지급기간까지의 잔여분은 지급)	
지급금액	정액형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에 (1-노후설계자금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연금사망률 및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따라 나누어 계산 후 공시이율의 변동을 반영한 연금연액 (보증지급기간:10년 ~ 40년/100세)
	체증형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에 (1-노후설계자금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연금사망률 및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계산한 연금연액 · 보증지급기간까지의 연금연액 : 연금개시시점의 연금연액이 계약자가 선택한 체증률(5%, 10%)로 증가하도록 계산 후 공시이율의 변동을 반영 · 보증지급기간 후의 연금연액 : 보증지급기간까지 체증된 연금연액을 기준으로 공시이율의 변동을 반영 (보증지급기간:10년 ~ 20년)
	소득보장형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에 (1-노후설계자금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연금사망률 및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계산한 연금연액 · 보증지급기간까지의 연금연액이 보증지급기간 후 연금연액의 50% 또는 100%를 추가로 지급되도록 계산 후 공시이율의 변동을 반영 (보증지급기간:10년 ~ 20년)

#### ② 종신연금형 보증금액부

지급사유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다만, 연금개시후 피보험자가 사망할 때 이미 지급된 연금총액이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에 (1-노후설계자금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일시금으로 지급)
지급금액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에 (1-노후설계자금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연금사망률 및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계산한 연금연액 · 「연금개시 후 피보험자가 사망할 때 이미 지급된 연금총액이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에 (1-노후설계자금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이 일시금으로 지급」 되도록 나누어 계산한 금액에 공시이율의 변동을 반영

#### ③ 확정연금형

지급사유	연금개시시점에 피보험자가 살아 있는 경우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확정된 연금지급기간의 매년 계약해당일에 피보험자의 생존 여부와 관계없이 확정지급
지급금액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에 (1-노후설계자금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약자가 선택한 확정된 연금지급기간 동안 나누어 계산 후 공시이율의 변동을 반영한 연금연액 (확정된 연금지급기간 : 5년, 10년, 15년, 20년, 30년, 50년, 60년)

#### ④ 상속연금형

지급사유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매년 계약해당일에 피보험자가 살아 있을 때 (다만, 피보험자가 사망할 때에는 사망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을 지급)
지급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차년도 연금연액 :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에 (1-노후설계자금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의 1년 후 이자액을 연금개시시점으로 할인한 금액」을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연금연액 (다만, '1년 후 이자액' 및 '할인한 금액'은 '연금개시시점의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li> <li>· 2차년도 이후 연금연액 :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에 (1-노후설계자금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에서 1차년도 연금연액(계약관리비용 포함)을 차감한 금액」에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직전 1년간의 이자상당액(다만, 연금개시시점 이후 계약자적립액의 인출이 있을 경우에는 산출방법서에 따라 「인출금액(인출수수료 포함) 및 인출금액(인출수수료 포함)에 부리되는 이자」를 차감하여 연금연액을 계산함)</li> </ul>

※ 계약소멸사유 :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또는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확정연금형에서 확정연금 지급기간이 종료된 경우

- (주) 1.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이란 연금계약 순보험료(기본보험료에서 보장계약 순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뺀 금액)를 적립이율로 납입일부터 일자계산을 하여 적립한 금액으로,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됩니다.
2. 연금연액은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연금연액에 부과되는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하여 계산됩니다.
  3. 연금연액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므로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연금연액도 변경됩니다. 또한,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의 공시이율이 연금개시시점의 공시이율과 계속 동일한 경우 연금연액은 직전 연금연액과 동일하나,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의 공시이율이 한번이라도 변경된 경우 해당 연도의 연금연액은 과거 ‘해당 연도와 동일한 공시이율(또는 최저보증이율)이 적용된 연도’의 연금연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4.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0.5%를 최저한도로 합니다.
  5. 연금연액은 매월, 3개월, 6개월로 나누어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6. 계약자가 해당 보험연도말까지 잔여 분할연금액의 지급을 신청한 때에는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계산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7. 종신연금형 보증기간부의 체증형의 경우에는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의 공시이율이 한번이라도 변경된 경우 보증지급기간의 실제 연금연액은 계약자가 선택한 체증률(5% 또는 10%)로 계산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보증지급기간 경과 후의 연금연액은 보증지급기간까지 체증된 연금연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제3호에도 불구하고, 보증지급기간까지의 연금연액의 경우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의 공시이율이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공시이율과 계속 동일하더라도 해당 연도의 연금연액은 직전년도의 연금연액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8. 종신연금형 보증기간부의 소득보장형의 경우에는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의 공시이율이 한번이라도 변경된 경우 보증지급기간의 실제 연금연액은 보증지급기간 이후 연금연액의 50% 또는 100%를 더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제3호에도 불구하고, 보증지급기간 이후 최초 도래하는 연금연액의 경우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의 공시이율이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공시이율과 계속 동일하더라도 해당 연도의 연금연액은 직전년도의 연금연액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9. 종신연금형 보증기간부의 경우 연금개시후 보증지급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보증지급기간 동안 지급되지 않은 연금을 연금지급 해당일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증지급기간 동안 지급된 연금총액은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에 (1-노후설계자금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 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10. 종신연금형 보증기간부의 경우 보증지급기간동안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잔여 보증지급기간의 연금을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계산한 금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11.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개시전에 연금사망률의 개정 등에 따라 연금연액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연금개시시점의 연금사망률 및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에 (1-노후설계자금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연금연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12. 확정연금형의 경우 연금개시후 확정된 연금지급기간(5년, 10년, 15년, 20년, 30년, 50년, 60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각 연금지급횟수(5회, 10회, 15회, 20회, 30회, 50회, 60회)까지의 미지급된 각 연금을 연금지급 해당일에 지

급하여 드립니다.

13. 연금개시후 피보험자가 생존할 때 종신연금형의 보증지급기간(확정연금형의 경우에는 확정연금지급기간)동안 잔여 보증지급기간(확정연금형의 경우에는 확정연금지급기간)의 연금을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계산한 금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 ◆ 일반적인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예시

### 1.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 회사는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건강진단을 받은 계약은 1년)이 내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2. 계약의 무효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봅니다)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된 경우 납입 면제된 보험료는 포함하지 않습니다)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하여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 3. 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사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한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4. 보험금 부지급 사유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않습니다.

가.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나.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라. 보험금지급 사유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2년 이내)

## ◆ 보험료 산출기초

### 1. 보장부분 적용이율

**Q : 보장부분 적용이율이란 무엇인가요?**

A : 보험료를 납입하는 시점과 보험금 지급사이에는 시차가 발생하므로 이 기간 동안 기대되는 수익을 미리 예상하여 일정한 비율로 보험료를 할인해주는데, 이 할인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보장부분 적용이율이 높으면 보험료는 내려가고, 낮으면 보험료는 올라갑니다.

무배당 보너스주는하이브리드연금보험 B2601의 보장부분에 적용한 적용이율은 연복리 2.50%이며, 동 이율은 적립액 및 해약환급금을 보증하는 이율은 아닙니다.

### 2. 적립부분 적용이율(적립이율)

적립부분 적용이율(적립이율)이란 보험회사가 장래 보험금 지급을 위하여 계약자의 납입보험료의 일부분을 적립해 나가는데, 이 적립액을 부리하는 이율을 의미합니다.

1. 무배당 보너스주는하이브리드연금보험 B2601(적립형)의 적립부분 적용이율(적립이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계약일부터 경과기간이 5년 이하인 경우 : 확정이율 (연복리 3.00%)
  - 2) 계약일부터 경과기간이 5년 초과 10년 이하인 경우 : 확정이율 (연복리 2.75%)
  - 3) 계약일부터 경과기간이 10년 초과인 경우 : 공시이율
2. 무배당 보너스주는하이브리드연금보험 B2601(거치형)의 적립부분 적용이율(적립이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계약일부터 경과기간이 5년 이하인 경우 : 확정이율 (연복리 3.75%)
  - 2) 계약일부터 경과기간이 5년 초과 10년 이하인 경우 : 확정이율 (연복리 2.36%)
  - 3) 계약일부터 경과기간이 10년 초과인 경우 : 공시이율
3. 공시이율은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와 운용자산이익률\*\*을 가중평균하여 산출된 공시기준이율에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한 조정률을 가감하여 매월 회사가 결정하는 이율로서 2026년 2월 현재 적립이율은 연복리 2.35%입니다. 경과기간이 10년 이후 공시이율이 변동될 경우 무배당 보너스주는하이브리드연금보험 B2601의 적립부분 적용이율도 변동됩니다.

\* 외부지표금리는 국고채, 회사채, 통화안정증권 및 양도성예금증서 등을 고려하여 산출

\*\* 운용자산이익률은 직전 12개월간의 운용자산에 대한 투자영업수익과 투자비용 등을 고려하여 산출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홈페이지 상품공시실에서 무배당 보너스주는하이브리드연금보험 B2601의 사업방법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3. 최저보증이율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0.5%를 적용합니다.

### 4. 적용위험률

**Q : 적용위험률이란 무엇인가요?**

A : 한 개인이 사망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등의 일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확률을 예측한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적용위험률이 높으면 보험료는 올라가고, 낮으면 보험료는 내려갑니다.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구분	무배당 예정 재해 장해 80%이상 발생률	
	남자	여자
20세	0.000016	0.000005
40세	0.000014	0.000003
60세	0.000074	0.000021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연금지급개시나이	예정 경험 개인연금 사망률	
	남자	여자
50세	0.000940	0.000480
60세	0.001500	0.000580
70세	0.002910	0.001040

\* 가입연령 40세 기준

5.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Q :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은 무엇인가요?**

A :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이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체결, 유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험료 중 일정비율을 책정한 것을 말합니다.

◆ 계약자 배당에 관한 사항

계약자 배당은 배당상품에 한하여 실시를 하며, 무배당 상품은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배당 상품은 배당상품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무배당 보너스주는하이브리드연금보험 B2601은 무배당 상품으로서 계약자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1. 해약환급금 산출기준 등 안내

**Q : 해약환급금은 어떻게 산출되며,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은 이유는 뭔가요?**

A : 우리 에이비엘생명보험주식회사는 보험료 계산 시 적용한 위험률로 산출한 순보험료식 계약자적립액에서 해약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를 할 때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2. 해약환급금 및 적립액 예시

### 가. 적립형

(기준 : 기본보험료 30만원, 남자40세, 10년납, 월납, 연금개시나이 60세, 단위:원)

#### (1) 최저보증이율 가정

구 분		최저보증이율 0.5% 가정							
		1형				2형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A)	해약환급금 (B)	환급률 (B/A)	계약자적립액 (C)	적립률 (C/A)	해약환급금 (B)	환급률 (B/A)	계약자적립액 (C)	적립률 (C/A)
3개월	900,000	547,382	60.8%	836,667	93.0%	833,411	92.6%	833,411	92.6%
6개월	1,800,000	1,400,969	77.8%	1,679,540	93.3%	1,673,004	92.9%	1,673,004	92.9%
9개월	2,700,000	2,260,808	83.7%	2,528,665	93.7%	2,518,824	93.3%	2,518,824	93.3%
1년	3,600,000	3,126,945	86.9%	3,384,088	94.0%	3,370,918	93.6%	3,370,918	93.6%
2년	7,200,000	6,655,412	92.4%	6,869,698	95.4%	6,842,964	95.0%	6,842,964	95.0%
3년	10,800,000	10,504,448	97.3%	10,675,876	98.9%	10,635,170	98.5%	10,635,170	98.5%
4년	14,400,000	14,251,669	99.0%	14,380,240	99.9%	14,325,143	99.5%	14,325,143	99.5%
5년	18,000,000	18,650,021	103.6%	18,735,735	104.1%	18,665,816	103.7%	18,665,816	103.7%
6년	21,600,000	22,587,728	104.6%	22,630,585	104.8%	22,545,590	104.4%	22,545,590	104.4%
7년	25,200,000	26,632,543	105.7%	26,632,543	105.7%	26,532,058	105.3%	26,532,058	105.3%
8년	28,800,000	30,855,983	107.1%	30,855,983	107.1%	30,787,078	106.9%	30,787,078	106.9%
9년	32,400,000	35,195,568	108.6%	35,195,568	108.6%	35,159,110	108.5%	35,159,110	108.5%
10년	36,000,000	41,094,492	114.2%	41,094,492	114.2%	41,091,373	114.1%	41,091,373	114.1%
15년	36,000,000	42,075,544	116.9%	42,075,544	116.9%	42,072,347	116.9%	42,072,347	116.9%
20년	36,000,000	43,081,370	119.7%	43,081,370	119.7%	43,078,091	119.7%	43,078,091	119.7%

#### (2) 평균공시이율, 공시이율 중 작은 값 가정

구 분		평균공시이율 2.50%, 공시이율 2.35% 중 작은 값 가정(2026년 2월 현재)							
		1형				2형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A)	해약환급금 (B)	환급률 (B/A)	계약자적립액 (C)	적립률 (C/A)	해약환급금 (B)	환급률 (B/A)	계약자적립액 (C)	적립률 (C/A)
3개월	900,000	547,382	60.8%	836,667	93.0%	833,411	92.6%	833,411	92.6%
6개월	1,800,000	1,400,969	77.8%	1,679,540	93.3%	1,673,004	92.9%	1,673,004	92.9%
9개월	2,700,000	2,260,808	83.7%	2,528,665	93.7%	2,518,824	93.3%	2,518,824	93.3%
1년	3,600,000	3,126,945	86.9%	3,384,088	94.0%	3,370,918	93.6%	3,370,918	93.6%
2년	7,200,000	6,655,412	92.4%	6,869,698	95.4%	6,842,964	95.0%	6,842,964	95.0%
3년	10,800,000	10,504,448	97.3%	10,675,876	98.9%	10,635,170	98.5%	10,635,170	98.5%
4년	14,400,000	14,251,669	99.0%	14,380,240	99.9%	14,325,143	99.5%	14,325,143	99.5%
5년	18,000,000	18,650,021	103.6%	18,735,735	104.1%	18,665,816	103.7%	18,665,816	103.7%
6년	21,600,000	22,587,728	104.6%	22,630,585	104.8%	22,545,590	104.4%	22,545,590	104.4%
7년	25,200,000	26,632,543	105.7%	26,632,543	105.7%	26,532,058	105.3%	26,532,058	105.3%
8년	28,800,000	30,855,983	107.1%	30,855,983	107.1%	30,787,078	106.9%	30,787,078	106.9%
9년	32,400,000	35,195,568	108.6%	35,195,568	108.6%	35,159,110	108.5%	35,159,110	108.5%
10년	36,000,000	41,094,492	114.2%	41,094,492	114.2%	41,091,373	114.1%	41,091,373	114.1%
15년	36,000,000	46,096,081	128.0%	46,096,081	128.0%	46,092,578	128.0%	46,092,578	128.0%
20년	36,000,000	51,713,635	143.6%	51,713,635	143.6%	51,709,700	143.6%	51,709,700	143.6%

(3) 공시이율 가정

구 분		공시이율 2.35% 가정(2026년 2월 현재)							
		1형				2형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A)	해약환급금 (B)	환급률 (B/A)	계약자적립액 (C)	적립률 (C/A)	해약환급금 (B)	환급률 (B/A)	계약자적립액 (C)	적립률 (C/A)
3개월	900,000	547,382	60.8%	836,667	93.0%	833,411	92.6%	833,411	92.6%
6개월	1,800,000	1,400,969	77.8%	1,679,540	93.3%	1,673,004	92.9%	1,673,004	92.9%
9개월	2,700,000	2,260,808	83.7%	2,528,665	93.7%	2,518,824	93.3%	2,518,824	93.3%
1년	3,600,000	3,126,945	86.9%	3,384,088	94.0%	3,370,918	93.6%	3,370,918	93.6%
2년	7,200,000	6,655,412	92.4%	6,869,698	95.4%	6,842,964	95.0%	6,842,964	95.0%
3년	10,800,000	10,504,448	97.3%	10,675,876	98.9%	10,635,170	98.5%	10,635,170	98.5%
4년	14,400,000	14,251,669	99.0%	14,380,240	99.9%	14,325,143	99.5%	14,325,143	99.5%
5년	18,000,000	18,650,021	103.6%	18,735,735	104.1%	18,665,816	103.7%	18,665,816	103.7%
6년	21,600,000	22,587,728	104.6%	22,630,585	104.8%	22,545,590	104.4%	22,545,590	104.4%
7년	25,200,000	26,632,543	105.7%	26,632,543	105.7%	26,532,058	105.3%	26,532,058	105.3%
8년	28,800,000	30,855,983	107.1%	30,855,983	107.1%	30,787,078	106.9%	30,787,078	106.9%
9년	32,400,000	35,195,568	108.6%	35,195,568	108.6%	35,159,110	108.5%	35,159,110	108.5%
10년	36,000,000	41,094,492	114.2%	41,094,492	114.2%	41,091,373	114.1%	41,091,373	114.1%
15년	36,000,000	46,096,081	128.0%	46,096,081	128.0%	46,092,578	128.0%	46,092,578	128.0%
20년	36,000,000	51,713,635	143.6%	51,713,635	143.6%	51,709,700	143.6%	51,709,700	143.6%

- ※ 상기 예시금액은 최저보증이율, 감독규정 제 1-2조제 13호에 따른 현재(2026년 2월)의 [평균공시이율(2.50%), 공시이율(연복리 2.35%) 중 작은 값] 및 현재(2026년 2월)의 공시이율(연복리 2.35%)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단,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5년 이하인 경우에는 확정이율 연복리 3.00%, 5년 초과 10년 이하인 경우에는 확정이율 연복리 2.75%를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 ※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0.5%로 합니다.
- ※ 상기 예시금액은 적립이율의 변동이 없고, 중도인출이 없으며, 보험료를 납입해당일에 납입한 경우를 전제로 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보험기간 중 적립이율이 변동하거나 보험료를 납입 해당일에 납입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이 예시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 이 계약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위험보험료, 부가보험료)를 차감한 보험료에 대하여만 적립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립합니다.
- ※ 이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납입한 보험료에서 지난 기간의 위험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해약공제금액 포함) 등이 차감되므로 해약환급금은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 실제 해약환급금은 적립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며, 향후 공시이율이 변동되면 해약환급금도 변동됩니다.
- ※ 공시이율은 매 1개월마다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상기 환급률은 보험료 누계 대비 해약환급금의 비율이며, 상기 적립률은 보험료 누계 대비 적립액의 비율입니다.
- ※ 상기 예시된 금액 및 환급률 등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 상기 예시금액은 장기유지보너스를 계약자적립액에 더하여 계산한 금액입니다.
- ※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8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 공시이율입니다.

나. 거치형

(기준: 일시납보험료 5,000만원, 남자 55세, 연금개시나이 65세, 단위:원)

(1) 최저보증이율 가정

구 분		최저보증이율 0.5% 가정							
		1형				2형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A)	해약환급금 (B)	환급률 (B/A)	계약자적립액 (C)	적립률 (C/A)	해약환급금 (B)	환급률 (B/A)	계약자적립액 (C)	적립률 (C/A)
3개월	50,000,000	49,631,121	99.3%	49,631,121	99.3%	49,897,766	99.8%	49,897,766	99.8%
6개월	50,000,000	49,914,841	99.8%	49,914,841	99.8%	50,117,545	100.2%	50,117,545	100.2%
9개월	50,000,000	50,201,184	100.4%	50,201,184	100.4%	50,339,356	100.7%	50,339,356	100.7%
1년	50,000,000	50,490,175	101.0%	50,490,175	101.0%	50,563,218	101.1%	50,563,218	101.1%
2년	50,000,000	52,157,495	104.3%	52,157,495	104.3%	52,165,012	104.3%	52,165,012	104.3%
3년	50,000,000	54,051,798	108.1%	54,051,798	108.1%	54,059,596	108.1%	54,059,596	108.1%
4년	50,000,000	56,017,137	112.0%	56,017,137	112.0%	56,025,227	112.1%	56,025,227	112.1%
5년	50,000,000	59,056,176	118.1%	59,056,176	118.1%	59,064,570	118.1%	59,064,570	118.1%
6년	50,000,000	60,388,384	120.8%	60,388,384	120.8%	60,396,976	120.8%	60,396,976	120.8%
7년	50,000,000	61,752,032	123.5%	61,752,032	123.5%	61,760,827	123.5%	61,760,827	123.5%
8년	50,000,000	63,147,862	126.3%	63,147,862	126.3%	63,156,864	126.3%	63,156,864	126.3%
9년	50,000,000	64,576,634	129.2%	64,576,634	129.2%	64,585,849	129.2%	64,585,849	129.2%
10년	50,000,000	68,539,125	137.1%	68,539,125	137.1%	68,548,557	137.1%	68,548,557	137.1%

(2) 평균공시이율, 공시이율 중 작은 값 가정

구 분		평균공시이율 2.50%, 공시이율 2.35% 중 작은 값 가정(2026년 2월 현재)							
		1형				2형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A)	해약환급금 (B)	환급률 (B/A)	계약자적립액 (C)	적립률 (C/A)	해약환급금 (B)	환급률 (B/A)	계약자적립액 (C)	적립률 (C/A)
3개월	50,000,000	49,631,121	99.3%	49,631,121	99.3%	49,897,766	99.8%	49,897,766	99.8%
6개월	50,000,000	49,914,841	99.8%	49,914,841	99.8%	50,117,545	100.2%	50,117,545	100.2%
9개월	50,000,000	50,201,184	100.4%	50,201,184	100.4%	50,339,356	100.7%	50,339,356	100.7%
1년	50,000,000	50,490,175	101.0%	50,490,175	101.0%	50,563,218	101.1%	50,563,218	101.1%
2년	50,000,000	52,157,495	104.3%	52,157,495	104.3%	52,165,012	104.3%	52,165,012	104.3%
3년	50,000,000	54,051,798	108.1%	54,051,798	108.1%	54,059,596	108.1%	54,059,596	108.1%
4년	50,000,000	56,017,137	112.0%	56,017,137	112.0%	56,025,227	112.1%	56,025,227	112.1%
5년	50,000,000	59,056,176	118.1%	59,056,176	118.1%	59,064,570	118.1%	59,064,570	118.1%
6년	50,000,000	60,388,384	120.8%	60,388,384	120.8%	60,396,976	120.8%	60,396,976	120.8%
7년	50,000,000	61,752,032	123.5%	61,752,032	123.5%	61,760,827	123.5%	61,760,827	123.5%
8년	50,000,000	63,147,862	126.3%	63,147,862	126.3%	63,156,864	126.3%	63,156,864	126.3%
9년	50,000,000	64,576,634	129.2%	64,576,634	129.2%	64,585,849	129.2%	64,585,849	129.2%
10년	50,000,000	68,539,125	137.1%	68,539,125	137.1%	68,548,557	137.1%	68,548,557	137.1%

(3) 공시이율 가정

구 분		공시이율 2.35% 가정(2026년 2월 현재)							
		1형				2형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A)	해약환급금 (B)	환급률 (B/A)	계약자적립액 (C)	적립률 (C/A)	해약환급금 (B)	환급률 (B/A)	계약자적립액 (C)	적립률 (C/A)
3개월	50,000,000	49,631,121	99.3%	49,631,121	99.3%	49,897,766	99.8%	49,897,766	99.8%
6개월	50,000,000	49,914,841	99.8%	49,914,841	99.8%	50,117,545	100.2%	50,117,545	100.2%
9개월	50,000,000	50,201,184	100.4%	50,201,184	100.4%	50,339,356	100.7%	50,339,356	100.7%
1년	50,000,000	50,490,175	101.0%	50,490,175	101.0%	50,563,218	101.1%	50,563,218	101.1%
2년	50,000,000	52,157,495	104.3%	52,157,495	104.3%	52,165,012	104.3%	52,165,012	104.3%
3년	50,000,000	54,051,798	108.1%	54,051,798	108.1%	54,059,596	108.1%	54,059,596	108.1%
4년	50,000,000	56,017,137	112.0%	56,017,137	112.0%	56,025,227	112.1%	56,025,227	112.1%
5년	50,000,000	59,056,176	118.1%	59,056,176	118.1%	59,064,570	118.1%	59,064,570	118.1%
6년	50,000,000	60,388,384	120.8%	60,388,384	120.8%	60,396,976	120.8%	60,396,976	120.8%
7년	50,000,000	61,752,032	123.5%	61,752,032	123.5%	61,760,827	123.5%	61,760,827	123.5%
8년	50,000,000	63,147,862	126.3%	63,147,862	126.3%	63,156,864	126.3%	63,156,864	126.3%
9년	50,000,000	64,576,634	129.2%	64,576,634	129.2%	64,585,849	129.2%	64,585,849	129.2%
10년	50,000,000	68,539,125	137.1%	68,539,125	137.1%	68,548,557	137.1%	68,548,557	137.1%

- ※ 상기 예시금액은 최저보증이율, 감독규정 제 1-2조제 13호에 따른 현재(2026년 2월)의 [평균공시이율(2.50%), 공시이율(연복리 2.35%) 중 작은 값] 및 현재(2026년 2월)의 공시이율(연복리 2.35%)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단,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5년 이하인 경우에는 확정이율 연복리 3.75%, 5년 초과 10년 이하인 경우에는 확정이율 연복리 2.36%를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 ※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0.5%로 합니다.
- ※ 상기 예시금액은 적립이율의 변동이 없고, 중도인출이 없으며, 보험료를 납입해당일에 납입한 경우를 전제로 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보험기간 중 적립이율이 변동하거나 보험료를 납입 해당일에 납입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이 예시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 이 계약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위험보험료, 부가보험료)를 차감한 보험료에 대하여만 적립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립합니다.
- ※ 이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납입한 보험료에서 지난 기간의 위험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해약공제금액 포함) 등이 차감되므로 해약환급금은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 실제 해약환급금은 적립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며, 향후 공시이율이 변동되면 해약환급금도 변동됩니다.
- ※ 공시이율은 매 1개월마다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상기 환급률은 보험료 누계 대비 해약환급금의 비율이며, 상기 적립률은 보험료 누계 대비 적립액의 비율입니다.
- ※ 상기 예시된 금액 및 환급률 등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 상기 예시금액은 장기유지보너스를 계약자적립액에 더하여 계산한 금액입니다.
- ※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8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 공시이율입니다.

◆ 모집수수료율

모집수수료란?
모집수수료란 저축성 보험계약 1건당 예정된 모집수수료로서 회사가 상품별 최적사업비 가정에 따라 부가된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중 모집인에게 지급되는 비용입니다.

가. 1형 적립형

(기준 : 남자40세(60세 연금개시), 기본보험료 월 30만원, 10년납)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합계
모집수수료율	10.83%	2.92%	2.92%	2.92%	2.92%	2.92%	2.92%	28.35%

나. 1형 거치형

(기준 : 남자55세(65세 연금개시), 일시납보험료 1억원)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합계
모집수수료율	1.882%	0.309%	0.00%	0.00%	0.00%	0.00%	0.00%	2.191%

다. 2형 적립형

(기준 : 남자40세(60세 연금개시), 기본보험료 월 30만원, 10년납)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합계
모집수수료율	4.16%	4.16%	4.16%	4.16%	4.16%	4.16%	4.16%	29.12%

라. 2형 거치형

(기준 : 남자55세(65세 연금개시), 일시납보험료 1억원)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합계
모집수수료율	1.764%	0.441%	0.00%	0.00%	0.00%	0.00%	0.00%	2.205%

※ 예시한 모집수수료율은 향후 지급되는 것을 추정한 수치이며, 예시를 위하여 작성하였으므로 판매채널(금융기관대리점)별로 실제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수수료 안내표

가. 적립형

1) 기본비용 및 수수료

① 1형 적립형

(기준 : 남자40세(60세 연금개시), 기본보험료 월 30만원, 10년납)

1년~7년	8년~10년	11년 이후
7.49% ~ 7.49%	4.44% ~ 4.44%	0.31% ~ 0.31%

구분	목적	시기	비용
보험관계비용	계약체결비용	매월	7년 이내: 기본보험료의 3.990% (11,970원) 7년 초과 10년 이내: 기본보험료의 0.940% (2,820원)
	계약관리비용	매월	10년 이내: 기본보험료의 3.500% (10,500원) 10년 초과: 기본보험료의 0.300% (900원)
	위험보험료	매월	기본보험료의 0.0040% ~ 0.0107% (12원 ~ 32원)
연금수령기간 중 비용	연금수령기간 중의 관리비용	연금수령시	연금연액의 0.5%
해약공제	해지에 따른 패널티	해지시	아래 도표 참조*

※ 해약공제 비용

(단위 : 원)

경과시점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7년이상
해약공제금액	257,143	214,286	171,429	128,571	85,714	42,857	0	0
해약공제비율	7.1%	3.0%	1.6%	0.9%	0.5%	0.2%	0.0%	0.0%

주) 해약공제금액은 계약해지시까지의 경과기간에 따라 계약해지시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에서 실제 공제되는 금액입니다.

주) 해약공제비율은 이미 납입한 주계약 기본보험료 대비 해약공제금액의 비율입니다.

② 2형 적립형

(기준 : 남자40세(60세 연금개시), 기본보험료 월 30만원, 10년납)

1년~7년	8년~10년	11년 이후
7.85% ~ 7.85%	3.50% ~ 3.50%	0.31% ~ 0.31%

구분	목적	시기	비용
보험관계비용	계약체결비용	매월	7년 이내: 기본보험료의 4.350% (13,050원) 7년 초과 10년 이내: 기본보험료의 0.000% (0원)
	계약관리비용	매월	10년 이내: 기본보험료의 3.500% (10,500원) 10년 초과: 기본보험료의 0.300% (900원)
	위험보험료	매월	기본보험료의 0.0040% ~ 0.0107% (12원 ~ 32원)
연금수령기간 중 비용	연금수령기간 중의 관리비용	연금수령시	연금연액의 0.5%
해약공제	해지에 따른 패널티	해지시	없음

2) 추가비용 및 수수료

구분	목적	시기	비용
추가납입보험료	계약유지·관리비용	납입시	추가납입보험료의 0.5%와 50만원 중 적은 금액
중도인출수수료	중도인출에 따른 비용	중도인출시	인출금액의 0.2%와 2,000원 중 적은 금액

주) 중도인출 한계액 이내에서 추가납입하는 경우에는 추가납입보험료에 대한 계약관리비용은 부가하지 않습니다.

나. 거치형

1) 기본비용 및 수수료

① 1형 거치형

(기준 : 남자55세(65세 연금개시), 일시납보험료 5,000만원)

1차월	2차월 ~ 15차월	16차월 이후
1.42%	0.12% ~ 0.12%	0.01% ~ 0.01%

구분	목적	시기	비용
보험관계비용	계약체결비용	매월	1차월 : 일시납보험료의 0.766% (383,000원) 2차월 이후 ~ 15차월 이내 : 일시납보험료의 0.106% (53,000원)
	계약관리비용	매월	1차월 : 일시납보험료의 0.650% (325,000원) 2차월 이후 : 일시납보험료의 0.010% (5,000원)
	위험보험료	매월	일시납보험료의 0.0001% ~ 0.0001% (32원 ~ 62원)
연금수령기간 중 비용	연금수령기간 중의 관리비용	연금수령시	연금연액의 0.5%
해약공제	해지에 따른 패널티	해지시	없음

② 2형 거치형

(기준 : 남자55세(65세 연금개시), 일시납보험료 5,000만원)

1차월	2차월 ~ 15차월	16차월 이후
0.80%	0.16% ~ 0.16%	0.01% ~ 0.01%

구분	목적	시기	비용
보험관계비용	계약체결비용	매월	1차월 : 일시납보험료의 0.150% (75,000원) 2차월 이후 ~ 15차월 이내 : 일시납보험료의 0.150% (75,000원)
	계약관리비용	매월	1차월 : 일시납보험료의 0.650% (325,000원) 2차월 이후 : 일시납보험료의 0.010% (5,000원)
	위험보험료	매월	일시납보험료의 0.0001% ~ 0.0001% (32원 ~ 62원)
연금수령기간 중 비용	연금수령기간 중의 관리비용	연금수령시	연금연액의 0.5%
해약공제	해지에 따른 패널티	해지시	없음

2) 추가비용 및 수수료

구분	목적	시기	비용
추가납입보험료	계약유지·관리비용	납입시	추가납입보험료의 0.5%와 50만원 중 적은 금액
중도인출수수료	중도인출에 따른 비용	중도인출시	인출금액의 0.2%와 2,000원 중 적은 금액

주) 중도인출 합계액 이내에서 추가납입하는 경우에는 추가납입보험료에 대한 계약관리비용은 부가하지 않습니다.